#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박 정·송옥주·김용민

서영교・한병도・권인숙

윤후덕 • 전해철 • 백혜련

윤준병 • 박성준 • 남인순

김경만 · 맹성규 · 양정숙

강득구 · 이낙연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각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위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법률 제 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	4
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u>공정</u>	<u>분쟁</u>
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
	<u>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u>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 등) ① ~ ⑤ (생	제20조(조정 등)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	©
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	
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	
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u> <u>원회 및 시·도에</u>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u>조정</u>	원	협의
회의	경우	공	정거라	위원	회에,
시·도	협의회	의	경우	공정	<u>성거래</u>
위원회	및 시	-도	<u>에</u>		
⑦ (현	행과 4	같음	)		